

충남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

제 1차 개정 2014.11.07.

제 2차 개정 2015.01.28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통계학과(이하 “학과”라고 한다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논문제출자격시험) ① 논문제출자격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의 시험과목은 학생이 선택하되 학과의 전임교수가 강의했던 대학원 교과과정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비전임교수의 강의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주임교수가 허락할 수 있다.

② 석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3개 과목을 선택한다.

③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한다. 단, 박사과정 학생이 석사과정 중에 이수하여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 중 석사과정 자격시험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박사과정 자격시험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.

④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석사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 동안 이수한 과목 중 4개 과목을 선택한다.

⑤ (합격기준) 시험 과목별 합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시험 과목 점수 100점 중 70점 이상

2. 시험 과목의 정규 수업 성적이 A0 이상

⑥ 자격시험의 답안지는 5년간 보관하고 자격시험 각 과목의 시험성적과 통과여부 및 자격시험의 합격여부에 대한 결과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4조(외국어 능력기준)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1. TEPS 455점 이상
 2. TOEIC 550점 이상
 3. TOEFL(CBT) 150점 이상
 4. TOEFL(iBT) 55점 이상
 5. 언어교육원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
- ②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유효기간은 입학 시부터 청구논문제출 내 유효한 성적표만 인정한다.
- ③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
제5조(학술지게재 의무조건)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학술지게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(단, 석사과정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.)

- ① 교원업적평가지행지침 제9조에 의한 국제저명학술지, 국제전문학술지(등재), 국내전문학술지(등재), 국내전문학술지(등재후보), 기타학술지 중 하나 이상으로 분류되는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하고 학술지게재 요약서(별지 제1호의 서식)를 제출해야 한다.
- ② 게재된 논문이 통계학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의 유무는 지도교수가 판단한다.
- ③ 주저자 및 공동저자 모두 인정한다.
- ④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⑤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한 후의 실적만을 인정한다.

제6조(논문지도위원회)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.

- ②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,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 ‘논문지도위원회 구성신청서’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
-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중 ‘석·박사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’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

하며,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.

⑤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개발표 후 별지 제3호 서식 ‘논문 계획 승인서’를 학과에 제출한다.

⑥논문지도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경우 청구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시행세칙의 개정)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제 6조 논문지도위원회 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입학자(재입학자 포함)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학술지게재 요약서

[통계학과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논문발표 심의자료]

1. 취득예정자의 인적사항

성명		과정	박사과정 (), 석·박사통합과정 ()
청구논문제목			
지도교수		전공분야	

2. 발표논문의 실적요약

논문제목	
학술지명	
학술지발행기관	
게재연월	
저자명(모두)	

3. 발표논문확인

(1) 논문게재 학술지 분류(해당항목에 표시)

- 국제저명학술지 ()
- 국제전문학술지(등재) ()
- 국내전문학술지(등재) ()
- 국내전문학술지(등재후보) ()
- 기타학술지 ()

(2) 발표논문의 통계학과의 관련도 여부: 관련성 있음(), 관련성 없음()

4. 첨부서류

(1) 게재논문 증빙자료(별쇄본, 논문 사본,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중 택일)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.

20 년 월 일

지도교수 _____ (서명)

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

학 번		성 명	
소 속	직 위	성 명	위 원 (위원장)

위와 같이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_____ (인,서명)

지도교수 _____ (인,서명)

통계학과 주임교수 귀하

※ 작성요령

1. 대상 :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박사학위 과정 학생
2.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: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
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함
3. 3인 이상의 위원 중 위원장을 1인 임명함

논문 계획 승인서

소 속 대 학 :

전 공 :

학 번 :

성 명 :

위 학생은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
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.

심사 위원장 : (인)

심사위원 : (인)

심사위원 : (인)

학과주임 : (인)

통계학과 주임교수 귀하